

선	기관의 장
람	



제 697 호

2006년 6월 29일 목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6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66호(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9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67호(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개정규칙) 16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226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3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72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말소등록예고) 4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73호(용역(소액수익)전자입찰공고[장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마무리공사폐기물처리용역(수집운반)]) 4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74호(용역(소액수익)전자입찰공고[장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마무리공사폐기물처리용역(중간처리)]) 4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775호(재래시장의인정 공고) 51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28호(재건축정비사업사업시행변경인가(안남·동암연립 재건축정비사업)) 52

회								
람								

규	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6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계	769	494	19	43	17	196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74	441	11	40	16	16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42	17	2	5	1	17
행정	24	11	2		1	10
의무	4			4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136	90	3	6	3	34
행정	81	45	3		2	31
세무	3	3				
사회복지	2	2				
전산	1	1				
임업	2	2				
보건	1	1				
환경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3	3				
행정·세무	4	4				
행정·사회복지	9	6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행정·기계	1	1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임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임업·토목	1	1				
통신·전자통신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전기·건축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194	142	5	7	4	36
행정	104	67	5		2	30
세무	14	14				
사회복지	11	5				6
전산	3	3				
기계	2	2				
전기	3	3				
화공	1	1				
농업	1	1				
임업	3	3				
수산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5	5				
토목	16	15			1	
건축	11	10			1	
지적	5	5				
화공·환경	1	1				
축산·수의	1	1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8급 소계	206	136		12	7	51
행정	98	65		1	3	29
세무	21	21				
사회복지	30	8				22
전산	4	4				
기계	2	1			1	
전기	2	2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4	3			1	
축산	1	1				
수산	1	1				
보건	9	5		4		
의료기술	2			2		
간호	5			5		
환경	5	4			1	
토목	8	8				
건축	4	3			1	
지적	3	3				
통신기술	1	1				
임업·토목	1	1				
전기·기계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9급 소계	90	52		9	1	28
행정	42	21			1	20
세무	5	5				
사회복지	10	2				8
전산	2	2				
전기	1	1				
임업	4	4				
보건	6	2		4		
의료기술	4			4		
식품위생	1			1		
환경	3	3				
토목	5	5				
건축	4	4				
지적	3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수행비서	1	1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기능직 계	<u>93</u>	<u>51</u>	8	3	1	<u>30</u>
6급 소계	3	3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7급 소계	5	4				1
기계	1	1				
운전	3	3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3	3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4	4				
9급 소계	<u>26</u>	<u>14</u>	5	2		<u>5</u>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9	4	1	1		3
간호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2		2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u>10</u>	<u>7</u>	1			<u>2</u>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10급 소계	47	20	1	1	1	24
기계	1	1				
운전	18	2		1	1	14
조무(조무)	20	9	1			10
조무(지도)	6	6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사무보조(필기)조무(조무)	1	1				

□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및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과 소나무 재선충병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속인력을 보강 등 정원증원과 관련 각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정원증원 : 3명(행정6급 1명, 지적6급 1명, 임업9급 1명)
- 구 본 청(485명 → 494명, 9명 증)
 - 1과 신설에 의한 직급간 정원조정(행정5급 1명 증 ← 행정9급 △1명)
 - 담당통·폐합에 따른 6급 정원감소 (△2명)
 - 직렬단수화(세무6급1, 지적6급1)에 따른 직렬조정
 - : 행정·세무 6급 1명→행정·사회6급1(주민생활지원과)
 - : 행정·지적 6급 1명→행정·사회6급1(동)
 - 직렬변경 : 행정8급1명 → 임업·토목8급1명(문화홍보실 체육시설 등 관리인력보강)
 - 인력조정사항(9명 증)
 - : 5급 1명, 6급 △2명, 7급 5명, 8급 5명, 9급1명, 기능△1명
- 출장소 : 임업8급 1명 →행정8급 1명(문화홍보실 체육시설등 관리인력 보강에 따른 직렬변경)
- 동 (202명 → 196명, △6명)
 - 담당신설에 따른 6급 17명 증가 : 구이관(2), 신설(15)
 - 직렬 : 행정14, 행정·사회복지3
 - 인력조정사항(△6명) : 업무이관 및 담당(6급) 신설에 따른 직급정원조정
 - : 6급17명, 7급△5명, 8급△7명, 9급△12명, 기능1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6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목“(사회경제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복지과장, 청소과장, 지역경제과장은”으로 한다.

제8조 관련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관련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인사발령 이전에 사무의 처리는 개정전의 규칙에 의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및 제12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의 1호 중 “사회경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사무분장표

- 11 -

[illegible]

부서명	분 장 사 무	비 고
지 역 경제과	1.~20.(생략) 21. 공공근로 사업추진 및 관리 22. 실업대책 등에 관한 사무 23 .유·무료 직업소개 사업등록·신고에 관한 사무 24.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 기본계획 수립시행 25. 고용촉진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6.~ 27.(생략) 28. 신규고용 창출 및 수요관리 29. 취업알선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30.~31.(생략) 32. 신규고용 창출 및 수요관리 33. 취업알선 계획수립 및 시행 34. 구인·구직 알선 등에 관한 사무 35. 취업정보 전산망 운영관리 36.~82.(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건 축 과	1.~26.(생략) 26.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	(신설)
도 시 계획과	1.~3.(생략) 4 4.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보전에 관한 사무 5.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관한사무 6.~20.(생략)	

【별 표5】

동의 사무분장표

부서명	분장사무	비 고
동사무소	1.~23.(생략) 24. 마을기금확인, 기능보유자 사실증명 25.~31.(생략) 32. 복지대상자 초기 상담 및 신청접수 33. 복지대상자 관리 및 급여신청 34. 복지대상자 일제조사 35. 장애인등록, 급여 신청 및 관리 36. 매·화장 및 묘지개장 신고처리 37. 결식아동 접수·신청 및 관리 38. 청소년지도위원 추천 및 관리 39. 기타 주민생활지원관련 업무 40. 고용촉진훈련·구인구직·공공근로신청에 관한 사무 41. (내용은 현행과 같음) 42.~43.(생략) 44.~48.(생략)	

□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국·과의 명칭변경 및 사무조정에 의거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 주 요 내 용

- 국 명칭변경(안 제 6조)
 - 사회경제국 → “주민생활지원국”
- 과 및 직렬 신설, 과 명칭변경(안 제6조)
 -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복지과장 → 주민복지과장
- 구 분청 분장사무 조정(안 제8조[별표1])
 -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무(문화홍보실 → 주민복지과)이관
 - 각급학교 지원에 관한 사무(총무과→ 주민복지과)이관
 -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
 - 사회복지과의 주민복지과로의 명칭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고용관련업무(지역경제과 → 주민복지과)이관
- 동 분장사무 정리(안 제15조 [별표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67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관련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고객만족(CS)행정 기능 강화 등과 관련한 조직개편에 의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과 사무이관에 따른 사무조정사항에 대한 부서의 소재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총무과 고객만족(CS)행정 기능강화에 따른 사무신설 및 민원지적과 고객만족관련업무 이관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 민원지적과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 등 사무의 총무과 이관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사무 등 신설
- 주민생활지원기능 사무의 부서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청소년관련업무 : 문화홍보실 → 주민복지과
교육기관 및 취학아동에 관한사무 : 총무과 → 주민복지과
고용에 관한 사무 : 지역경제과 →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 신설 : 주민복지과
- 건설과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시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 공통사항 등 구 본청내 부서별 사무전결 변동사항 반영

행		개 정 안					비 고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비 고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파 서 영	단 위 사 마 영	비 고
1. ~ 8.(생략)		1. ~ 8.(현행과 같음)		1. ~ 8.(현행과 같음)		1. ~ 8.(현행과 같음)		
9.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5인 이상 20인 미만인 다수인		나. 10인 이상 2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나. 10인 이상 2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나. 10인 이상 2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다수인 민원 세분화
관련민원		관련민원		관련민원		관련민원		
		나. 5인 이상 1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나. 5인 이상 1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나. 5인 이상 10인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		
		관련민원		관련민원		관련민원		
다. 5인 미만 고충민원 처리		다. 5인 미만 고충민원 처리		다. 5인 미만 고충민원 처리		다. 5인 미만 고충민원 처리		
민원충보실		민원충보실		민원충보실		민원충보실		
1. ~ 44.(생략)		1. ~ 44.(현행과 같음)		1. ~ 44.(현행과 같음)		1. ~ 44.(현행과 같음)		
45. 청소년 육성		(삭제)		(삭제)		(삭제)		사무이관(→주민복지과)
46.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삭제)		사무이관(→주민복지과)
47.(생략)		45.(내용은 현행과 같음)		45.(내용은 현행과 같음)		45.(내용은 현행과 같음)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1. ~ 8.(생략)		1. ~ 8.(현행과 같음)		1. ~ 8.(현행과 같음)		1. ~ 8.(현행과 같음)		
9. 아동취학		(삭제)		(삭제)		(삭제)		사무이관(→주민복지과)
10. ~ 50.(생략)		9. ~ 49.(내용은 현행과 같음)		9. ~ 49.(내용은 현행과 같음)		9. ~ 49.(내용은 현행과 같음)		
51. 교육경비 보조사업		(삭제)		(삭제)		(삭제)		사무이관(→주민복지과)
52. ~ 73.(생략)		50. ~ 71.(내용은 현행과 같음)		50. ~ 71.(내용은 현행과 같음)		50. ~ 71.(내용은 현행과 같음)		
(신설)		72. 고객만족 관련 민원사무 제도개선		72. 고객만족 관련 민원사무 제도개선		72. 고객만족 관련 민원사무 제도개선		고객만족관련업무 신설 및 이관(←민원지적과)
		가. 민원사무제도개선		가. 민원사무제도개선		가. 민원사무제도개선		
		나. 각종 민원편의 시책발굴		나. 각종 민원편의 시책발굴		나. 각종 민원편의 시책발굴		
		다. 고객만족 종합계획수립		다. 고객만족 종합계획수립		다. 고객만족 종합계획수립		
(신설)		73. 민원행정 규제완화 및 채신 주관사항		73. 민원행정 규제완화 및 채신 주관사항		73. 민원행정 규제완화 및 채신 주관사항		
(신설)		74. 친절배가운동 추진관리		74. 친절배가운동 추진관리		74. 친절배가운동 추진관리		
(신설)		75. 고객만족관련 특수시책		75. 고객만족관련 특수시책		75. 고객만족관련 특수시책		

행		개 정 안						비 고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결 관 자					비 고
				세	마	기	기	기	
	17. 지적 측량에 관한 사무		12. 지적 측량에 관한 사무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동지 검사 및 정리		나. 토지이동지 검사 및 정리	기			기		글자 삽입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지적측량수행자 감독				기	○	
	18. 지적공부에 관한 사무		13. 지적공부에 관한 사무						
	가. ~머. (생략)		가. ~머. (현행과 같음)						
	버.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사항		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기			기	○	용어 변경
	서. ~바. (생략)		서. ~바. (현행과 같음)						
	19. 지적행정 일반		14. 지적행정 일반						
	(신설)		가.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기	○	
	(신설)		나. 지적전산 사용자 권한 관리 업무				기	○	
	(신설)		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업무				기	○	
	(신설)		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기	○	
	가. ~라. (생략)		마. ~아. (내용은 현행과 같음)						
	(신설)		자. 지적전산정보 자료제공 업무				기	○	
	마. ~히. (생략)		차. ~머. (내용은 현행과 같음)						
	(신설)		버. 토지이동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기	○	
	20. (생략)		15. (내용은 현행과 같음)						
	21. 지적 관련 민원 발급 등에 관한 사무		16. 지적 관련 민원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가. ~라. (생략)		가. ~라. (현행과 같음)						
	마. 수치지적부 등본 열람·교부		마. 경계점좌표 등본 열람·교부	○			○		용어 변경
	바. ~사. (생략)		바. ~사. (현행과 같음)						
	(신설)		아. 지적측량기준점 열람·교부				○		
	22. 토지관리에 관한 사무		17. 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가. ~나. (생략)		가. ~나. (생략)						
	다.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다.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기		용어 변경
	라.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요청		라. 남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요청	○			기	○	용어 변경
	마. ~바. (생략)		마. ~바.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비고
부서명	단위사무명	부서명	단위사무명	전결권자				
				세 매 단	· 과 단	과 단	과 단	
	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기안		기안	○ 상황조정(부구청장→청장)
	23. ~25.(생략)		18. ~20.(내용은 현행과 같음)					
	26. 부동산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에 관한 사무					
	가. ~나.(생략)		가. ~나.(생략)					
	(신설)		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다. ~너.(생략)		라. ~더.(내용은 현행과 같음)					
	(신설)							
		주민생활 지원과	1.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종합계획 수립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기안		기안	○
			나.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기안		기안	○
			2. 사회복지 시설 홍보 및 주민교육		기안	○		
			3. 복지시설 구호 및 지도감독		기안	○		
			4.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기안	○		
			5.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의 설치 허가.		기안	○		
			동시설의 운영 지도					
			나. 사회복지시설 소재지 및 임소 정원 변경 허가		기안	○		
			다. 사회복지시설 폐지 또는 사업장지 신고		기안	○		
			라. 사회복지시설명칭 또는 시설의 장 변경 신고		기안	○		
			6. 국가보훈단체(구지부)보조 및 지원		기안	○		
			7. 재해 및 일반구호					
			가. 재해구호 계획 및 대책 수립		기안			○
			나. 재해구호대상자 조사 및 물자수급 관리		기안	○		
			다. 재해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기안	○		
			8.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운영					
			가.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1) 운영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2)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서명			제정					개정안					비고
부서명	단위사무명	부서명	단위사무명	제정				개정안					
				전결권자				전결권자					
				결산 금	금회	세·과 금	파가 금	결산 금	금회	세·과 금	파가 금		

제정안			비고			
부서명	단위사무명	부서명	전결권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부서명	단위사무명	부서명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라.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마.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통지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바. 독촉장 발부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사.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아. 의료급여기간 연장 승인 신청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자. 의료급여 진료비 대불 신청 처리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20. 장애인복지에 관한사무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나.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라. 장애인복지시설(관) 운영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마. 장애인 시설 입소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사. 비용수납 승인신청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차. 장애인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카. 기타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21. 한센양로자(시설보호자) 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 생계비 및 간식비 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나. 보호시설 관리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22. 재활사업 실시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나. 자활후견기관 운영 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다. 자활근로사업 운영 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라. 지역봉사사업 운영 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마. 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바. 자활기관협의회 운영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사. 현물급여(침수리사업) 추진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가.나.다.라.사.아.자.

– 25 –

평				개 정 안				비 고	
평	단 위 사 마 평	평	단 위 사 무 명	평	전 결 결 권 자				
					결 산 금	결 산 금	결 산 금		결 산 금
			카. 무료급식소 운영 및 관리		기안	○			
			3. 장사 등에 관한 업무						
			가. 묘지정비 및 운영관리		기안	○			
			나. 사설묘지(중종, 문종, 가족, 개인)설치 허가		기안	○			
			다.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인가		기안	○			
			라.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 등		기안	○			
			개정 허가						
			마.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타인의 묘지 등		기안	○			
			개정 신고						
			바. 사설묘지구역 변경허가		기안	○			
			사. 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당 폐지허가		기안	○			
			4.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기안	○			
			5. 여성관련 정책						
			가.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나. 여성단체 지원·육성		기안	○			
			다. 여성 지위향상 및 교양지도 사업		기안	○			
			6. 오폐수여성 발정예방 및 선도 사업						
			가. 여성상담 사업		기안	○			
			나. 일군 위안부 관리		기안	○			
			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여성 상담 및 보고		기안	○			
			7. 여성복지시설 및 여성보호시설 운영지도						
			가. 선도보호시설 지도감독		기안	○			
			나. 모자보호시설 지도감독		기안	○			
			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지도		기안	○			
			8.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도						
			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기안	○			
			나. 저소득 모·부자가정 책정관리		기안	○			
			다. 기타 모·부자가정을 위한 일반 시설		기안	○			
			9. 아동복지						

영역		개 정 안										비 고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총 계			
				세	회	과	과	과				
			가.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								○	
			나.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	
			다.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신고									
			라. 아동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지원									○
			마. 결식아동 선정, 지원									
			바. 소년소녀가장 지원									
			사. 국내임양아동 지원									
			10. 청소년 육성									사무이관(←문화홍보실)
			가.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 수립								○	
			나. 지방청소년위원회 설치 운영									○
			다. 불우청소년 보호									
			라. 청소년 교육 및 훈련									
			마. 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
			바.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도 관리									
			사.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 계획 수립									○
			아. 각종 청소년 행사 운영									
			자. 청소년 선도 및 상담 지도									
			차. 어려운 청소년 지원									
			11.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사항									사무이관(←문화홍보실)
			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나. 청소년 유해환경 관리									
			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라. 과징금 부과, 징수, 처분 관리									
			마. 청소년보호법 행정소송									
			12. 보육사업									
			가. 보육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
			나. 보육위원회 설치운영									○
			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라. 국·공유 보육시설 신축									○

원				개 정 안				비 고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전 결 권 자				부서명	단 위 사 무 명	
		세 금 마 금	금 과 금	과 금 과 금	과 금 과 금			
	사. 공공근로자 4대 보험가입 등 인력관리	기안	○					
	23. 실업대책 등에 관한 업무	기안	○			(삭제)		*
	24. ~34.(생략)					14. ~24.(내용은 현행과 같음)		
건 설 과	1. ~42.(생략)					1. ~42.(현행과 같음)		
	43. 생태공원조성					(삭제)		사무이관(→ 인천광역시)
	44. ~45.(생략)					43. ~44.(내용은 현행과 같음)		
건 축 과	1. ~4.(생략)					1. ~4.(현행과 같음)		
	5.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기안	○			5.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기안 ○	하향조정(과장→담당)
	6. ~8.(생략)					6. ~8.(현행과 같음)		
	9. 건축선의 지정	기안	○			9. 건축선의 지정	기안	○ 상향조정(과장→청장)
	10.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기안	○			10.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기안	○ 상향조정(과장→청장)
	지정변경에 관한사항					지정변경에 관한사항		
	11. 재해위험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기안	○			(삭제)		건축법 개정으로 조항삭제
	관한 사항							
	12. 위원회 운영					(삭제)		공통사항 13번 중복
	가. 위원회 회의소집	기안	○					
	나.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회의 결과 보고	기안						
	13. ~16.(생략)					11. ~14.(현행과 같음)		
	17.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에 관한 사항	기안	○			(삭제)		사무이관(→ 교통과)
	18.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생략)					가.(현행과 같음)		
	나. 시공중인 대형건물에 대한 동결기	기안	○			나. 시공중인 대형건물에 대한 동결기	기안	○ 상향조정(과장→국장)
	및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관리					및 해빙기, 우기대비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태점검		
	다.(생략)					다.(현행과 같음)		
	19. ~23.(생략)					16. ~20.(내용은 현행과 같음)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6월 29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26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 【별표4】 , 【별표5】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본청 각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494	
기 획 감사실	계		33	
	일반직	소계	33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전산1
		7급	14	행정10, 전산3, 토목1
		8급	8	행정6, 전산2
		9급	3	행정2, 전산1
문 화 홍보실	계		19	
	일반직	소계	17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6
		8급	4	행정3, 임업·토목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2	
		8급	1	기계1
		10급	1	조무(조무)1
총무과	계		38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33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6, 통신·전자통신1
		7급	8	행정7, 통신기술·전자통신1
		8급	13	행정11, 통신기술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9급	2	행정2
	별정직	소계	1	
		7급	1	일반비서1
	기능직	소계	3	
		8급	1	조무(조무)1
		9급	1	교환1
		10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경 영 재정과	계		30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5, 전기1
		8급	6	행정5, 전산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2	
		6급	1	기계1
		7급	3	운전3
		8급	2	운전2
		9급	3	운전2, 조무(조무)1
		10급	3	운전2, 조무(조무)1
재난안전 관 리 과	계		17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4	행정3, 행정·토목·건축1
		7급	5	행정3, 토목1, 건축1
		8급	3	행정2, 전기·기계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3	
		8급	3	전기1, 기계1, 조무1
세 무 과	계		51	
	일반직	소계	50	
		5급	1	행정1
		6급	7	세무3, 행정·세무4
		7급	15	행정1, 세무14
		8급	22	세무21, 전산1
		9급	5	세무5
	기능직	소계	1	
		9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중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민 원 지적과	계		36	
	일반직	소계	34	
		5급	1	행정·지적1
		6급	6	행정3, 지적3
		7급	11	행정6, 지적5
		8급	9	행정5, 토목1, 지적3
		9급	7	행정4, 지적3
	기능직	소계	2	
		9급	2	사무보조(사서)1, 조무(조무)1
주민생활 지원과	계		29	
	일반직	소계	29	
		4급	1	행정·임업1
		5급	1	행정1
		6급	6	사회복지2, 행정·사회복지4
		7급	8	행정4, 사회복지4
		8급	10	행정5, 사회복지5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주 민 복지과	계		22	
	일반직	소계	21	
		4급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2
		7급	7	행정6, 사회복지1
		8급	7	행정4, 사회복지3
		9급	1	행정1
		소계	1	
	기능직	9급		
		10급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1
청 소 과	계		25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행정·환경2
		7급	7	행정5, 환경2
		8급	4	행정3, 환경1
		9급	2	행정1, 환경1
	기능직	소계	6	
		8급	2	운전1, 조무(조무)1
		9급	3	운전2, 조무(조무)1
		10급	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환 경 위생과	계		31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6	행정1, 보건1, 환경1, 행정·보건2, 행정·환경·화공1
		7급	9	행정1, 보건4, 환경3, 화공·환경1
		8급	11	행정2, 화공1, 보건5, 환경3
		9급	4	보건2, 환경2
지 역 경제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화공1, 행정·농업1
		7급	6	행정1, 기계1, 화공1, 농업1, 수산1, 축산·수의1
		8급	7	행정1, 화공1, 기계1, 전기1, 농업1, 축산1, 수산1
		9급	2	행정2
건설과	계		28	
	일반직	소계	24	
		4급	1	시설1
		5급	1	토목1
		6급	4	행정1, 토목2, 행정·토목1
		7급	7	행정1, 전기1, 토목5
		8급	7	행정2, 토목4, 전기1
		9급	4	전기1, 토목3
	기능직	소계	4	
		6급	1	전기1
		7급	1	기계1
		10급	2	기계1, 조무(조무)1
건축과	계		30	
	일반직	소계	26	
		5급	1	건축1
		6급	6	행정1, 건축3, 토목·건축1, 행정·전기·건축1
		7급	11	행정1, 기계1, 전기1, 건축8
		8급	3	행정1, 건축2
		9급	5	토목1, 건축4
	기능직	소계	4	
		8급	1	조무(조무)1
		9급	2	건축1, 조무(조무)1
		10급	1	조무(지도)1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도 시 정비과	계		26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토목·임업1
		6급	5	행정2, 임업2, 임업·토목1
		7급	7	행정3, 임업3, 토목1
		8급	4	행정1, 임업3
		9급	5	행정1, 임업4
	기능직	소계	4	
		9급	2	조무(조무)2
		10급	2	조무(지도)2
교통과	계		36	
	일반직	소계	30	
		5급	1	행정1
		6급	6	행정5, 행정·기계1
		7급	6	행정5, 토목1
		8급	12	행정12
		9급	5	행정3, 전산1, 토목1
	기능직	소계	6	
		6급	1	조무(조무)1
		10급	5	조무(조무)4, 사무보조(필기)·조무(조무)1
도 시 계획과	계		23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토목1
		6급	4	행정1, 토목1, 토목·건축2
		7급	9	행정2, 토목6, 건축1
		8급	6	행정2, 토목3, 건축1
	기능직	소계	3	
		10급	3	조무(지도)3

[별표4]

출장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17	
출장소	계		17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임업1
		7급	4	행정2, 토목1, 건축1
		8급	7	행정3, 기계1, 임업1 환경1, 건축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별표5]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196	
구월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보건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구월2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구월3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구월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간석1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간석2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전산1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간석3동	계		13	
	일반직	소계	11	
		5급	1	행정·환경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간석4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만수1동	계		14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5	행정2, 사회복지3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9급	1	조무(조무)1
		10급	1	운전1
만수2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전산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1	조무(조무)1
		10급	1	운전1
만수3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만수4동	계		10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2	행정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운전1

구 분	직 종	계급	정원	직급별 내역
만수5동	계		11	
	일반직	소계	9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만수6동	계		13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3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3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9급	1	운전1
장수서창동	계		10	
	일반직	소계	8	
		5급	1	행정·지적·토목·임업1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2	
		9급	1	운전1
		10급	1	조무(조무)1
남촌도림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토목·임업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9급	1	운전1
		10급	1	조무(조무)1
논현고잔동	계		13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화공·기계·환경1
		6급	2	행정2
		7급	2	행정2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3	
		9급	1	조무(조무)1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 제 안 이 유

-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관련 1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및 정부의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에 따른 인력보강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단속인력을 보강 등 정원증원과 관련 구본청 각 부서 및 출장소, 동의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1과 신설 및 담당 신설·통폐합등에 따른 정원 조정(구 본청)
- 문화홍보실 체육공원 관리등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보강에 따른 직렬조정(출장소)
- 담당신설 및 구 본청 1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72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6. 07. 10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6. 06. 26 ~ 2006. 07. 10 (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2도9725	김인남	계양구 계산동 931-29 동성(아) 나-508호	인천지방법원 (2001카단10572)	오재현	남동구 구월동 1111-6호
인천2도9725	김인남	계양구 계산동 931-29 동성(아) 나-508호	인천지방법원 (95카단7032)	편중식	부천시 오정구 중동신도시 한아름(아)1508/904
인천2도9725	김인남	계양구 계산동 931-29 동성(아) 나-508호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95카단4151)	강영택	마포구 망원동 465-21호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2932)

2006. 06.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73호

G2B공고20060617398-00

용역(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건설, 가연성, 혼합) 520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라. 기초금액 : 6,800,000원(추정가격 6,181,818원, 부가세 618,182원)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 6. 27(화) 09:00 ~ 6. 29(목) 18:00

바.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06. 6. 30(금) 10:00 입찰집행관 pc

사. 현장설명 : 등록기간중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용역설계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전까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32-453-2985)에게 열람 및 문의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 까지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별도 발주함.)

- 낙찰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별도 입찰공고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계약시에는 공동 대표자의 자격으로 일괄(공동) 계약 방식으로 진행됨. 아울러 대표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 제189호, 2005. 12. 30)에 의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주의사항

낙찰자는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기타사항

-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기술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 조회)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032-453-29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26.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리관

용역(소액수의)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 폐기물처리(건설, 가연성, 혼합) 520톤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입니다.
 라. 기초금액 : 6,292,220원(추정가격 5,720,200원, 부가세 572,020원)
 ※ 폐기물반입수수료(수도권매립지) 351,780원은 계약시 계상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 6. 27(화) 09:00 ~ 6. 29(목) 18:00
 바. 전자입찰 집행 일시 및 장소 : 2006. 6. 30(금) 14:00 입찰집행관 pc
 사. 현장설명 : 등록기간중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용역설계서 및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전까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32-453-2985)에게 열람 및 문의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 계약체결일) 까지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하여 별도 발주함.)
 - 낙찰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별도 입찰공고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공동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계약시에는 공동 대표자의 자격으로 일괄(공동) 계약 방식으로 진행됨. 아울러 대표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 제189호, 2005. 12. 30)에 의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의 90%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 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주의사항

낙찰자는 5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기타사항

-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
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 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 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약
관, 조달청기술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
이지(www.g2b.go.kr)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개찰결과 조회)
및 우리구 홈페이지(www.namgu.incheon.kr)에 게재되며 기타 상세한 내
용은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032-453-29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26.

인천광역시남동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775호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모래내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하였음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6. 26.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재래시장의 인정

- 시 장 명 : 모래내시장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구월4동 1264-68번지
- 시장대표 : 김 성 철
- 시장규모 : 토지면적 20,370m².
영업장면적 11,462m²
- 인 정 일 : 2006. 6. 26.
- 구역도면 : “별지”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6 - 28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규정에 따라 변경
인가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6. 6. 27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정비사업명 : 안남·동암연립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안남·동암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엄재홍
석우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이항덕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웅신아트프라자 504호
3.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면적 및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3외 1
 - 대지면적 : 3,859.2m²
 - 연 면 적 : 12,147.57m²
 - 사업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3층 1개동, 91세대
 - 사 업 비 : 13,288,680천원
4. 사업시행기간 : 2005. 5. ~ 2006. 12. .
5. 주요 변경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시행기간	2005. 5. ~ 2006. 8.	2005. 5. ~ 2006. 12	공사기간 연장